



제 433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검 토 보 고

<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9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개관	4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6
3.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 및 정의	15
나.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다.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기본계획	21
라. 탄소중립산업위원회	24
마.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27
바.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33

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36
아. 재원 조성, 규제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41
자.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46
차. 부칙	50

※ 참고자료 51

1.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건	51
2. 제정안 비용추계서 요약	52
3. 탄소중립산업 범위 관련 해외 사례	53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54
5.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분류	55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5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¹⁾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국이나 EU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탄소중립산업법(NIA)」 등을 제정 또는 추진 중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2024.6.27.) 및 상정(2024.8.19.) 후,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 개정(2025.10.1. 시행)으로 의안의 소관위원회가 변경됨.

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하나의 범주로 아우르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5장 30개의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제2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장은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임.

또한, 제4장은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5장 보칙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부칙에서는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

[표 1]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조항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제6조	탄소중립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7조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	탄소중립산업위원회
제3장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9조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0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	특화단지 육성시책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3조	특화단지 운영 지원
	제14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기반 구성	제15조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17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1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19조	규제개선 신청 등
	제2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21조	전문인력양성
	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23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25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26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8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과태료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추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²⁾하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및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³⁾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미국의 산업, 특히 전기차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⁴⁾하는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액공제 외에도 첨단기술 차량 제조 등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지원, 에너지효율 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2) 2022. 8. 16.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발효되었고, 조문별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순차적으로 발표함.

3) 세액공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개정을 통해 이루어짐.

4) IRA에 의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로 미국 내에서 완성차 조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및 배터리 원산지에 대한 기준도 충족해야 함(<참고자료 1> 참조).

[표 2] 미국 IRA에 규정*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내용**

분류	세액공제 대상	주요 내용
생산세액공제 (PTC)	재생에너지 전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태양광,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공제(1kWh 당 0.3센트)
	적격 원자력	-적격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공제(1kWh 당 0.3센트)
	청정전력	-재생에너지 또는 적격 원자력에 해당하지 않는 탄소 무배출 전기에 대한 공제(1kWh 당 0.3센트)
	탄소포집	-포집 및 격리된 이산화탄소 톤당 17달러 또는 석유 회수증진을 위해 주입·활용된 이산화탄소 톤당 12달러 공제
	청정수소	-생산된 청정수소 1kg 당 60센트 공제
	첨단 제조	-풍력 부품, 태양광 부품, 인버터,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제조에 대한 공제
투자세액공제 (ITC)	에너지	-태양광, 풍력 장비, 연료전지, 복합발전기, 폐기물,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적격 투자프로젝트 대상
	적격 선진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부의 심사를 거친 연료전지, 마이크로 터빈, 전력망 현대화 부품, CCS 등 선진 기술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대상
	청정전력	-2024.12.31. 이후에 가동된 무배출 발전설비 및 ESS 설비투자 대상
에너지효율 관련 세액공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개선	-비상업용 개인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품의 구매 및 설치에 대한 세액 공제
	주택용 청정에너지	-ESS 등 주거용 청정 에너지 장비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
	신축 에너지효율 주택	-신축 에너지효율 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
	에너지 고효율 상업용 건물	-에너지 고효율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액 공제

* IRA를 통해 미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 산업통상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함.

이에 대하여, 유럽도 2023년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⁵⁾을 제안하고, 그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제정⁶⁾하였는데, 미국의 IRA에 대응하여 친환경산업에 대한 EU의 역량 강화 및 외부의존도 축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처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기술을 개발하고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외부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해외시장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 수출 중심의 제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 수준 및 시장 조성이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므로 이를 따라잡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촉진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주요 탄소중립 분야에는 전기자동차(친환경자동차), 수소발전, 수소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설비 생산,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 있는데, 현재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촉진, 규제 특례, 특화단

5)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① 규제 간소화, ② 자금조달 촉진, ③ 기술 역량 강화, ④ 해외협력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청정기술 산업 육성이 주요 내용이며, 탄소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포함하고 있음.

6) 2023. 3. 초안을 발표하였고, EU 의회 승인을 거쳐 2024. 6. 발효됨.

지 지정 등 지원방안을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은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제8장 ‘녹색성장 시책’에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개별법에서 각 산업 분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탄소중립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 특히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탄소중립산업을 총괄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 및 재생에너지 설비, 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에 따른 무탄소수소(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한정함) 및 그 생산설비,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 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제품,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재생자원, ⑦ ①~⑥까지 제품의 소재·부품 및 관련 서비스임.

[표 3] 탄소중립산업 관련 소관 법령별 지원내용

구분	전기차	재생에너지 및 설비	무탄소수소 및 설비	에너지 절약사업	녹색제품	재생자원
소관법령	친환경 자동차법	신재생 에너지법	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탄소중립 기본법	친환경 산업법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관	O	O	O	O	O	X
	국무회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회	수소경제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국가기후 위기대응 위원회, 국무회의	
위원회 유무	X	X	O	X	O	X
			수소경제 위원회		국가기후 위기대응 위원회	
특화단지 지정	X	△	O	X	O	O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보급·조성	수소특화 단지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생태산업 단지
기술개발 사업 추진	O	O	O	O	O	O
	기술개발 위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기술개발 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수소전문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본계획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내용 포함	기후위기의 감시·예측과 관련 기술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인력양성	△	O	O	O	△	△
	기술기반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양성 사업 추진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인력양성 시책을 마련	청정건설 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훈련
예타 특례	X	X	X	X	X	X

구분	전기차	재생에너지 및 설비	무탄소수소 및 설비	에너지 절약사업	녹색제품	재생자원
소관법령	친환경 자동차법	신재생 에너지법	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탄소중립 기본법	친환경 산업법
재정지원	O	X	X	X	O	O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기후대응 기금	설비자금 등 지원
세제지원 특례	X	△	X	△	X	X
		(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표 3]에서와 같이 현행 탄소중립산업 관련 개별법은 기본계획, 특화단지 지정, 인력양성 지원, 세제 지원 등에 관하여 각 개별법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즉, 제정안과 같이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산업 분야들을 정해 하나의 법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이나 산업 중에서 개별법으로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을 때 개별법을 매번 제정하기 보다는 제정법 일부개정을 통해 새로운 분야들을 탄소중립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가 제정안과 중복되기 때문에 법률 적용 과정에서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혼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제정안 제5조에 따른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⁷⁾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⁸⁾ 등 개별법에 따른 분야별 기본계획과 수립 주거나 계획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기본계획 간의 연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제정안에서 정의하는 탄소중립산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의 일부분이고,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이미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 육성·지원 시책 마련(제54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제56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제59조),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제6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략)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제정안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탄소중립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데, 선정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산업을 제정안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에 포함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외에도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있음에도 제정안은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환경설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동 발의안 중 탄소중립산업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일부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입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수소법, 친환경자동차법 등 개별법에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②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자력발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연료전지, 수소차 등도 탄소중립산업에 해당하

여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산업적·기술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탄소중립산업”, “탄소중립산업기술”, “탄소중립산업사업자”,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등의 뜻과 범위를 제시함.

[표 4] 제정안 제1조,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중 다음 각 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무탄소수소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 및 그 생산설비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에너지절약사업
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제 정 안

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제품의 소재·부품 및 관련 서비스

2. “탄소중립산업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중립산업사업자”란 제1호의 탄소중립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란 탄소중립산업 및 탄소중립산업기술(이하 “탄소중립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탄소중립산업’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녹색산업’⁹⁾에 대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중 전기차, 재생에너지, 무탄소수소, 에너지절약사업, 녹색제품,¹⁰⁾ 재생자원에 대한 산업만을 탄소중립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0)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이 있음.

따라서,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의 정의에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제정안에서 녹색산업 중 일부 분야로 한정하여 탄소중립산업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개정안과 같이 녹색산업과 별도로 탄소중립산업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녹색산업 중 어떤 분야가 제정안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에 해당하는지 산업 분야별 특성과 형평성 등을 감안한 적절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미국 IRA의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보면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대한 공제 조항과 별도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모든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에 대한 공제 규정도 두고 있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가 지원¹¹⁾받을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후부는 정부의 육성·지원이 필요한 ‘탄소중립산업’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산업·기술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개정안에서 정한 산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산업 지원대상은 산업적, 기술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는데, 제정안은 원전, 연료전지, CCUS, 수소차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지원대상 범위가 과소하다는 입장임.

11) IRA는 배출제로 원전, CCUS, 바이오 디젤, 청정자동차 등을 지원하고, EU의 NZIA도 원자력 에너지 기술,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산업기술, 기타 CCUS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참고자료 3] 참조

[표 5] 제정안 및 개별법상 탄소중립 관련 분야 지원대상*

소관 개별법	제정안 지원대상	제외대상**
탄소중립기본법	녹색제품	-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 태양광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 전기 및 설비	▶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 발전 및 설비
수소법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 수소 및 그 생산설비	▶ 연료전지 ▶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송·건물·발전 등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 청정수소(재생에너지 외 에너지로 생산한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및 화합물)) - 수소발전 ▶ 수소용품 ▶ 수소연료사용시설 ▶ 수소가스터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절약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친환경산업법	재생자원	▶ 환경설비 ▶ 재제조 ▶ 금속자원 재자원화
-	+ 관련 소재·부품·서비스	-

*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됨

** 개별법에서는 지원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탄소중립산업에서 제외된 분야임

나.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정안 제3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탄소중립산업사업자가 탄소중립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아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제정안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6] 제정안 제3조,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탄소중립산업사업자는 혁신적인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산업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탄소중립산업사업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4조 단서 조항에서 제정안의 우선 적용 예외 사유로 탄소산업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소비자를 명시할 실익¹²⁾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2) 입법례를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유불리를 고려하도록 명시한 사례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법률이 일반적임.

다.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기본계획(안 제5조)

안 제5조는 정부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3년 단위의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표 7] 제정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3년 단위의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향 2. 탄소중립산업등의 현황과 국내외 환경 분석 3.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 탄소중립산업등 육성방향의 종합·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산업의 기술력 향상,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확산 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의 지정계획 및 체계적 조성·지원과 관련한 사항 7. 탄소중립산업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제 정 안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산업이 기술 수준이나 시장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고 그 격차를 따라잡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¹³⁾(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에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국가기본계획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부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정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간 정합성 확보가 곤란하고,

관계부처의 시행계획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가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⁴⁾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산업으로 정의되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이미 개별법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¹⁵⁾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간 내용이 중복되며 오히려 정책 방향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체계적이라는 입장임.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이외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내 기후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8조 검토의견에 따라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탄소중립산업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5) 다만,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재생자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음.

라. 탄소중립산업위원회(안 제8조)

제정안 제8조는 제정안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나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現 산업통상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現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표 8] 제정안 제8조

제정안
제8조(탄소중립산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탄소중립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

제 정 안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규제개선의 신청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산업의 육성·보호에 관한 정책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탄소중립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¹⁶⁾.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⁷⁾

16) 이외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정부 내 기후 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7) 이외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 등에서 기존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탄소중립산업위원회 심의사항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산업위원회가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¹⁸⁾등 개별법상 위원회와 기능이 상당히 유사·중복되므로, 기존에 있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나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⑨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 7. (생략)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 14. (생략)

마.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안 제9조~제14조)

제정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現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산업에 관련된 시설이 생태계를 이루어 산업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육성시책, 운영 지원 및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와 입주기관에 대한 민원 신속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표 9] 제정안 제9조~제14조

제 정 안
제9조(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탄소중립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 정 안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탄소중립산업 특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화단지 육성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제 정 안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

제 정 안

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화단지 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

제 정 안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의 면제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탄소중립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공장 설립,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투자·제품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의 주요 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정안이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제정안과 규정 체계가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라고 한다)이 있으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1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17조), 특화단지육성시책(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제19조),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제20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후부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과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의 필요성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¹⁹⁾

산업통상부는 수소특화단지, 생태산업단지 등 개별법에서 특화단지를 두고 있는 분야가 있어 기능이 유사·중복되며, 개별법에 특화단지 규정이 없더라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²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²¹⁾²²⁾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19) 이외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내 기후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8조 검토의견에 따라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탄소중립산업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바.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안 제15조)

제정안 제15조는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우선하도록 하며, 사업 시행을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기관에 대한 지원 및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10] 제정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풍력,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등을 중점산업**으로 하는 단지로, 탄소중립산업 일부에 대한 특화단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인 현황은 [참고자료 4] 참조

제 정 안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④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기술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나 개발 단계나 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크지 않아 정부 주도로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크며,

제정안과 같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²³⁾의 심의

2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상호 관련이 큰 과학기술과 개발과정을 연계한다면 기술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이라 함)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제5조), 기술개발사업 추진(제8조),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출연(제9조) 등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수소 기술, 전기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기술 등 제정안의 탄소중립기술을 일부 포함²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기후부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R&D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²⁵⁾

산업통상부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수소법, 친환경사업법 등 개별법과 기후기술법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현행 개별법에 따라 탄소중립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4) 동 고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5] 참조

25) 다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4항)의 고시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제정안 제16조는 ①기획재정부장관(現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특화단지 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²⁶⁾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³²⁷⁾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②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③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7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장관(現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1] 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제정안
제16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제 정 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의 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사업의 성질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²⁸⁾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²⁹⁾하고 있음.

2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9. (생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2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면제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 10. (생략)

제21조(예타면제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

현재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개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특화단지 조성사업이나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처리 및 면제 등을 인정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시급한 R&D 과제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하여, 기후부는 국제적인 탄소중립산업 육성·지원 동향을 고려시 신속한 R&D추진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근거 등의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³⁰⁾

산업통상부는 현재도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산업 분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기보다는 현행법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는 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체계를 따르고,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 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0)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 대한 기후부 의견에 따라 탄소중립산업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 재원 조성, 규제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등(안 제18조~제23조)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탄소중립산업등의 지원,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전문인력양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12] 제정안 제18조~제23조

제 정 안
제1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

제 정 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시책 수립과 연계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에

제 정 안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과 같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제 개선, 인력양성 등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경우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부는 안 제19조에 대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및 규제 특례 부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의견과, 안 제20조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 부여 시 관리·감독 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관계 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 관리·감독, 시정명령, 규제개선 적용에 대해 정책혼선 발생 우려가 있어 규정상 주체 설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산업통상부는 재정 지원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규제 개선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의해 규제 개선을 위한 절차와 관계 기관의 역할이 정착되어 있어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실익이 없

으며, 인력양성은 탄소중립 관련 소관 법령에서 이미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³¹⁾ 제정안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는 의견임.

31)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자.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25조)

안 제2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3] 제정안 제25조

제 정 안
제25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미국의 IRA나 EU의 NZIA 같은 탄소감축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제정안 취지와 같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탄소중립산업(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²⁾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328호, 2023.4.11. 시행)]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 32) 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③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④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다만, 조세감면에 관하여 개별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³³⁾ 제정안은 강행규정으로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25. (생략)

차. 부칙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음.

[표 14] 제정안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이 법률로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탄소중립산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대한 예외,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조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포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하위 법령의 입법 등 법률 시행의 준비를 위해 충분한 기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제정안과 입법 배경 및 법 구조가 유사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한 바 있고, 기후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46

참고 1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건

① “신규 청정 자동차 (New Clean Vehicle)”의 정의

기준요건 (강화) 30D(d)	- 소비자(납세자)에 의해 사용되며 재판매의 대상이 아님 - 적격 제조업자*에 의해 생산됨 (*VIN 정보 등 정기적 보고 수행)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타이틀 II 적용대상 자동차인 경우 - 14,000파운드 이하 중량인 경우 - 7kWh이상 충전식 배터리 전기 모터에 의해 주로 추진되는 경우
북미지역 내 최종조립 요건 (추가) 30D(d)(1)(G)	- (2022.8.16.부터 적용) 북미지역 내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 최종조립(Final Assembly): 제조업자가 공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딜러나 수입업자에게 ‘기계적 작동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자동차에 탑재된 상태로 전달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정절차(process)’
제외대상 30D(d)(7)	- 우려외국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에 의해 추출, 가공, 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통해 제조된 배터리 사용 전기차 - 우려외국기업에 의해 제조 및 조립된 배터리부품 사용 전기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40207(a)(5) 정의규정상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subject to the jurisdiction)’ 기업 또한 ‘우려외국기업’에 포함됨

② 배터리의 미국산 비율 충족 요건

핵심광물 비율요건 (최대 3,750달러 세액공제) 30D 30D(e)(1)(B)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적용비율(applicable percentage) 이상 - 미국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또는 ii) 미국의 FTA 체결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또는 iii)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기간별 적용비율: (장관 지침 발행일~ 2023.12.31.) 40% → (2024) 50% → (2025) 60%→(2026) 70% → (2027.1.1. ~) 80%
북미산 배터리부품 비율 요건 (최대 3,750달러 세액공제) 30D(e)(2)(B)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부품 중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된(셀, 모듈/팩 or 셀/모듈/팩) 부품이 적용비율 이상인 경우 *기간별 적용 백분율: (장관 지침 발행일 ~ 2023.12.31.) 50% → (2024~2025) 60% → (2026)70% → (2027) 80% → (2028) 90% → (2029.1.1. ~)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2

제정안 비용추계서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조문별 추계여부 현황]

재정수반요인	추계여부	비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 유사사례 참조
탄소중립산업 현황조사(안 제6조)		
탄소중립산업 관련 통계작성(안 제7조)		
탄소중립산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특례(안 제9조~제13조)	×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행령 위임 등으로 확정되지 않아 소요비용 예측에 한계가 있음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안 제15조)		
전문인력 양성(안 제21조)		
국제협력 등 사업화 지원(안 제22조)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안 제24조)		
세제지원(안 제25조)		
과태료 부과(안 제30조)		

II. 비용추계 결과(일부추계)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간 총 145.3억원, 연평균 29.1억원 이상

-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115	-	-	115	-	230	115
현황조사(안 제6조)	992	992	992	992	992	4,960	992
통계작성(안 제7조)	1,831	1,831	1,831	1,831	1,831	9,155	1,831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36	36	36	36	36	180	36
합 계	2,974	2,859	2,859	2,974	2,859	14,525	2,905

참고 3

탄소중립산업 범위 관련 해외 사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한국) 탄소중립산업법
청정 전기 및 탄소 배출 감축	특정 재생자원으로 생산되는 전기	재생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전기 및 설비
	에너지저장, 지열, 바이오가스, 소규모전력망제어기	전력 및 에너지 저장 기술	-
	저소득층과 관련하여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풍력시설	-	-
	산화탄소 격리	탄소포집·활용·저장(CCU S) 및 수송기술	-
	배출제로 원자력발전 (전기를 사용하는데 핵을 사용하는 적 격 및 첨단 핵발전시설)	핵분열 에너지 기술, 핵연 료주기 기술, 기타 핵 기술	-
청정연료	바이오디젤, 재생디젤 및 대체연료	재생연료(non-bio) 기술	-
	2세대 바이오연료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기술	-
	지속가능 항공연료	-	-
	청정수소	수소기술, 전기분해기 및 연료전지	재생에너지만을 이용 하여 생산한 무탄소 수소 및 그 생산설비
개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비업무용 에너지자산	히트펌프	-
	주거용 청정에너지	-	-
	상업용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시스템 효율 개선	에너지절약사업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	-
청정 자동차 (Clean Vehicle)	청정 자동차	-	전기자동차
	중고 청정 자동차	-	-
	상업용 청정 자동차	-	-
	대체연료 보급자산	-	-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	-
	첨단 제조생산	-	-
청정 전기 및 청정 교통	청정 전기 생산	-	(재생에너지 전기 및 설비)
	청정 전기 투자	-	
	적격 시설 자산 및 에너지저장 기술	-	-
	청정 연료 생산	-	-
송전	-	전력망 기술	-
기타	-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산 업 기술	재생자원
			녹색제품
			녹색산업의 소재·부품 및 관련 서비스

자료: 기후부

참고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혁신·융복합 거점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효율향상, 석유, 가스,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화력발전(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19.7월, 9개 중점산업)

- (지정 현황) 현재 6개 단지(8개 광역지자체) 지정·운영 중

구분	광주·전남 (‘19년)	전북 (‘19년)	경북 (‘20년)	경남 (‘20년)	부산·울산 (‘20년)	충북 (‘20년)
중점 산업	스마트그리드, 효율향상, 풍력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풍력 (리파워링)	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	원자력 (원전해체)	태양광, 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
기반 시설	80억 (‘24년 준공)	80억 (‘24년 준공)	76억 (‘24년 준공)	64억 (‘25년 준공)	-	-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 5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분류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세부내용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태양광 기술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을 흡수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태양열 기술	· 태양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풍력 기술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해양에너지 기술	· 해양의 조류, 조력, 파력, 온도차 또는 염분차 등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수력 기술	· 물이 가지는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수열 기술	· 해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지열 기술	· 지하수 또는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바이오에너지 기술	· 바이오매스(Biomass : 유기성 생물체의 총칭. 이하 같다)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연료로 변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전기화학 반응 또는 연소반응 등을 통해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기술
	석탄액화·가스화 기술	· 석탄 등의 원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운송·활용하는 기술	원자력 기술	·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열 또는 수소 등을 생산하는 설비인 원자력 시스템을 개량하는 기술 · 안전성·경제성·환경친화성을 가진 원자력 시스템을 설계·건설 또는 운영하는 기술
	핵융합에너지 기술	·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운송·활용하는 기술	수소 기술	·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운송하여 활용하는 기술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바이오매스 기술	경제적으로 대량 확보한 바이오매스를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하여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거나, 화학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폐자원 기술	- 폐기물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기술 - 생활·산업·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분야의 폐기물이나 활용가치가 적어진 폐자원 등을 유용한 연료·원료로 전환 또는 활용하는 기술
에너지의 생산·저장·전달·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발전효율 기술	- 기존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 발전과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산업효율 기술	산업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저탄소 고효율의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기술
	수송효율 기술	수송 모빌리티(승용·상용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건물효율 기술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 향상에 필요한 외피나 설비 관련 기술 또는 ICT 기반 운영기술
온실가스를 포집(捕集)·저장·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이산화탄소(CO ₂) 포집·저장·활용 기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 저장소에 격리하는 기술이나 또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하거나 유용한 화학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메탄(CH ₄) 처리 기술	축산, 농업 등에서 배출된 메탄(CH₄)을 포집하여 연료 또는 유용한 화학물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메탄 발생 자체를 저감시키는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 및 대체 기술	이산화탄소, 메탄 외의 온실가스를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온실가스가 아닌 가스로 대체하는 기술
	탄소흡수원 기술	육상 또는 해양 생태계에 대기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저장·전달·소비하는 기술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전력 통합 기술	기존의 전력망(grid)에 분산전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기반의 전력 네트워크 기술
	열 통합 기술	- 다양한 열원의 활용 및 저장 기술 - 효율적인 열 공급 기술 -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양방향 열거래 등을 포함한 열 네트워크 기술
	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기를 열, 가스 또는 연료·원료 등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기술